

#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인창동 지역주택조합 신축공사 중 석면해체제거공사 3차

2022년 3월 25일 (1일간)

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

**대호**주식회사

##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
------	-----

제출인	상호(대표자)	사업자등록번호
	인창동지역주택조합	474-80-01503
	주소	
	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77,3층(인창동)	(전화번호: 031-565-0403)

석면해체 · 제거 사업장	건물명	위치
	연면적(m <sup>2</sup> ) 3226m <sup>2</sup>	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80번길 36-3 인창동 515-21 일원
	석면건축자재[길이(m)·면적(m <sup>2</sup> )·부피(m <sup>3</sup> )]	작업기간 2022년 3월 25일 (1일간)
	개스킷 0.20	(필요시 별지 첨부)

측정 기관	대표자 김동령	사업자등록번호 457-88-01519
	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우재로 208, 3층(망우동)	
	측정자/분석자 이한나 / 서정화	

측정 결과	시료번호	측정 지점	측정 장비 (종류/수량)	유량 (l/분)	측정 일시	측정 결과 (f/cc)	검출석면의 종류
	첨부. 1 석면비산 측정결과						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	첨부. 1 석면비산 측정결과 / 첨부. 2 측정 지점		
	측정 시작 시간:	측정 종료 시간:	
	첨부. 1 석면비산 측정결과 / 첨부. 2 측정 지점		
	측정 시작 시간:	측정 종료 시간:	
	첨부. 1 석면비산 측정결과 / 첨부. 2 측정 지점		
	측정 시작 시간:	측정 종료 시간:	

「석면안전관리법」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·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.

제출인(대표자) **인창동지역주택조합**

**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** 귀하



첨부서류	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·제거작업 신고서 사본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





## 첨부.2 측정지점



작업 구역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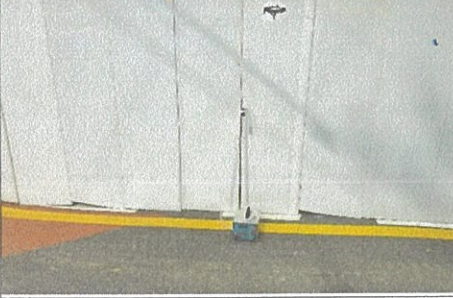





측정 위치

위생설비시설

폐기물



- 측정사진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부지경계선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05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2시 05분</p>	
부지경계선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11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2시 11분</p>	
부지경계선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18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2시 18분</p>	
부지경계선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24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2시 24분</p>	
위생설비 입구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33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9시 13분</p>	



- 측정사진

측정 지점	비산측정 시작 사진	비산측정 종료 사진	비고
폐기물 반출구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40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9시 20분</p>	
거주자 주거지역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47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0시 47분</p>	
거주자 주거지역	 <p>측정 시작 시간 : 8시 52분</p>	 <p>측정 종료 시간 : 10시 52분</p>	

## 5. 지정서

20-08-20:16:58 ;

대호㈜

# 1 / 1

제2020-120010호

### 석면조사기관 지정서(최초)

기관명	대호 주식회사	
소재지	(02174) 서울 중랑구 봉우재로 208 (망우동) 3층	
대표자성명	김동령	
지정사항	총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관할 지역 대행(지정) 한계	사업장(0)개소, 근로자(0)명
	대행(지정) 지역	전국

※ 준수사항

1. 석면조사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장의 자료제출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.
2.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『산업안전보건법』 제120조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2020. 8. 26.

서울지방고용노동청

